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2015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5. 07. 29. (수) 11:10~12:10

장소 : 한나요양원 회의실 (1층)

참석자: (재적이사 11명 중 8명 출석)

대표이사(의장) 박양조, 이사 정영록, 정승준, 이덕식, 차피득,
한동인, 한성태, 박순자

(기타 참석자: 한동숙 원장)

불참자: (위임장 보낸 이사 3명)

이사 정기현, 박종구, 임은희

박양조 목사의 성경봉독(로마서8장 28절)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의 말씀과 기도 후에 한동인 상임이사가 회원점명을 하니, 이사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이사 인원의 2/3이상이 되므로 의장 박양조 대표이
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말씀을 한 후 안건처리에 들어가다.

안건처리

1호 안건: 한나시니어케어센터의 법인운영 해지 검토 및 승인

의 장: 바쁘신 중에도 임시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나시니어케어센터의 법인운영 해지 검토 및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숙 원장이 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숙 원장: 한나시니어케어센터는 2011년 1월 28일 이천한나원
법인으로 등록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하였으나 시설로 전환하는 수급자가 증가되면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감소되었고, 그로 인한
재가 요양보호사의 수요도 감소되어 더 이상 기관운영이
어려워져 운영해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박순자 이사: 수급자 인원이 몇 명인가요?

한동숙 원장: 현재 수급자 인원은 16명입니다.

의 장: 첨부한 수급자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법인으로 전입시 총 수급자 인원이 30명에서
2015년 현재 1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7월 28일 현재
차액이 341,138원입니다.

박순자 이사: 수급자 인원이 16명인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한동숙 원장: 요양보호사 시급이 인상이 되어, 인건비 지출이 증가되고
재가시설 이용자가 늘지 않아 수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환수금이 발생되어 운영비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 장: 추세가 개인 재가복지시설이 매우 많고 타 법인에서도 재가
서비스를 하다가 중지된 곳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정관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
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승준 이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으니 해지를 동의합니다.

한성태 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같이 찬성하시면 “예”라고 말씀하시고, 반대하면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한나시니어케어센터는 이천한나원 법인에서 해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 안건: 법인 지도 점검 결과 시정조치(사업의 종류 조정)승인

의 장: 2015년도 4월 24일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도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내역을 한동숙 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숙 원장: 먼저 지적사항은 1) 법인 정관에 사업의 종류 구체적으로 미작성 2) 6개월 이상 미 운영 목적사업 정관에 기재 운영중인 목적사업 미기재(재가장기요양시설) 3) 2015년 예산 편성 이사회 의결, 2014년도에 미실시(2015년 실시) 시정조치로는 1) 법인 정관에 사업의 종류 구체적으로 작성 2) 6개월 이상 미 운영 목적사업 정관에서 삭제 (재가복지시설) 및 운영 중인 목적사업 기재 3) 2015년 예산편성 이사회 의결, 2014년도 실시 즉, 2016년도 예산편성분부터는 2015년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덕식 이사: 예. 정관변경을 동의합니다.

정승준 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같이 찬성하시면 “예”라고 말씀하시고, 반대하면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호 안건: 법인 이사회 임원 임기 연임건

의 장: 이사회 임원 임기 연임건에 대하여 외부추천이사 두 분을 영입해야 합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임원 임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외부추천이사 두 분을 영입해야 함으로, 만기되신 두 분은 임기종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추천이사 신청이 8월에 있고,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가 되는 작업이 10월 10일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동숙 원장: 전화로 이사회 건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임은희 이사님께서 건강상태로 인해 10월 10일 임기만기까지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기현 이사님은 건강상태로 인해 이사 연임이 어렵다고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인 이사: 임은희 이사님과 끝까지 이사직을 함께 했으면 했지만, 건강문제로 이번임기로 종료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임은희 이사님과 정기현 이사님을 명예이사로 추대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준 이사: 정관에 명예이사가 있습니까?

한동인 이사: 정관에 없이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형식적인 대우로 정하면 됩니다.

의 장: 임은희 이사님과 정기현 이사님의 임원 임기를 2015년 10월 10일자로 종료하고, 이사 정영록, 박양조, 이덕식, 정승준, 박종구, 차피득, 한성태 감사 권현복의 임기 연임을 바랍니다..

이덕식 이사: 예. 임기종료와 연임을 동의합니다.



정영록 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감사합니다. 모든 결정을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임기가 종료되고, 나머지는 연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호 안건: 시설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 승인

의 장: 한나요양원 운영규정 개정건과 취업규칙 개정건에 대하여 한동숙 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숙 원장: 한나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조항 제12조(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사항입니다. 현행은 3. 보호자 및 보증인의 의무. 개정안은 3. 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 의무로 추가되었습니다.

한나요양원 취업규칙 개정조항 제65조 (유급휴일)
현행은 설과 추석은 각각 2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설과 추석은 각각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 장: 보고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박순자 이사: 예.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피득 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감사합니다.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장: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차피득 장로의 기도로 폐회하겠습니다.

참석이사 및 감사 전원 기명 날인하다

대표이사 박 양 조



상임이사 한 동 인



이 사 정 영 록



이 사 정 승 준



이 사 이 덕 식



이 사 한 성 태



이 사 박 순 자



이 사 차 피 득

